

베트남, 환경보호법 개정

- 국가 / 지역 : 베트남
- 법률 번호 : 72/2020/QH14
- 의회 통과일 : 2020년 11월 17일
- 발효일 : 2022년 1월 1일

베트남 환경보호법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보호를 목표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 자연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과 자연자원의 보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보호법은 베트남의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책임과 협력을 강조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 개요 : 2020년 11월 17일 개정 및 2022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환경보호법(2020년) 개정안은 기존 부적절한 기준, 세부 사항의 부족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보다 현대적인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였다. 해당 개정안은 영향 평가 시 핵심 구성 요소 보호를 가장 우선시하며,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기후 변화 대응 강화를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과 탄소세에 대한 새로운 규정과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환경평가 및 모니터링에 대한 신규 규정을 포함하였다. 또한 환경보호에 관련된 다양한 주체의 권리와 책임 및 환경법규의 집행과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였다.

해당 개정은 환경보호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강화된 국제적인 약속과 책임을 강화한 것에 의의가 있다. 개정안은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보호법 시행령, 온실가스 배출 감소, 측정, 보고, 평가 방법 및 폐기물 관리에서 온실가스 인벤토리 개발에 관련 시행령, 2030년까지의 국가환경보호전략과 2050년 비전 등에 반영되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베트남 내 기업 및 주체들은 해당 환경보호 규정 및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추가적 투자와 노력이 요구된다.

• 주요내용

원문	번역문
<p>Article 1. Scope</p> <p>This Law provide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ctivities: rights,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agencies, organizations, residential communities, households and individuals involved i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ivities.</p>	<p>제 1조 범위</p> <p>이 법은 환경 보호 활동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환경 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 조직, 주거 공동체, 가정 및 개인의 권리, 의무 및 책임에 관한 내용을 제공한다.</p>
<p>Article 2. Regulated entities</p> <p>This Law applies to agencies, organizations, residential communities, households and individuals within the territory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including mainland, islands, territorial waters, underground space and airspace.</p>	<p>제 2조 규제 대상</p> <p>이 법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영토 내의 기관, 조직, 주거 공동체, 가정 및 개인에 적용되며, 본토, 섬, 영해, 지하 공간 및 상공을 포함한다.</p>
<p>Article 4. Principles of environmental protection</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Environmental protection is the right, obligation and responsibility of every agency, organization, residential community, household and individual. 2. Environmental protection serves as a basis, key factor and prerequisite for sustainable socioeconomic development. Environmental protection activities are associated with economic development an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and considered and assessed in the process of carrying out development activities. 3. Environmental protection harmonizes with social security, protection of children's right, promotion of gender equality and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 to live in a pure environment. 4. Environmental protection activities are carried out in a regular, public and transparent manner; priority is given to prediction and preven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emergencies and degradation, environmental risk management, waste minimization and strengthening of reuse and recycling of waste with a view to maximization of its value. 5. Environmental protection complies with natural law, natural, cultural and historical characteristics, and the level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boost development in ethnic minority and mountainous areas. <p style="text-align: center;">-OMITTED-</p>	<p>제 4조 환경 보호의 원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 보호는 모든 기관, 조직, 주거 공동체, 가정 및 개인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이다. 2. 환경 보호는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의 기반이며, 주요 요소이고 필수 조건이다. 환경 보호 활동은 경제 발전 및 자연 자원 관리와 연결되어 있으며, 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려 및 평가된다. 3. 환경 보호는 사회적 안전, 아동의 권리 보호, 성 평등 촉진 및 순수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인간의 권리 보호와 조화를 이룬다. 4. 환경 보호 활동은 규칙적이며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수행된다. 환경 오염, 긴급 상황 및 환경 악화의 예측 및 예방, 환경 위험 관리, 폐기물 최소화 및 폐기물 재사용 및 재활용 강화에 우선순위를 둔다. 이는 그 가치의 최대화를 위한 것이다. 5. 환경 보호는 자연 법, 자연적, 문화적 및 역사적 특성 및 사회경제 발전 수준을 준수합니다. 또한 소수 민족 및 산악 지역에서의 발전을 촉진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원문	번역문
<p>Article 5. State policies on environmental protection</p> <p>3. Focus on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protection of environment in natural heritage sites; efficiently and economically extract and use natural resources; develop green and renewable energy; develop technical infrastructure serving environmental protection.</p> <p>4. Give priority to environmental pollution elimination and recovery of degraded natural ecosystem, and attach great importance to environmental protection in residential areas.</p> <p>5. Diversify sources of investment capital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set a specific expenditure on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in the state budget and according to environmental protection requirements and tasks; prioritize the use of sources of funding for key environmental protection tasks.</p> <p>6. Safeguard interests of organizations, residential communities, households and individuals making their contribution to environmental protection activities; provide incentives and assistance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ctivities; promote environmentally-friendly products and services.</p> <p style="text-align: center;">-OMITTED-</p>	<p>제 5조 환경 보호에 대한 국가 정책</p> <p>3. 생물 다양성 보존 및 자연 유산지의 환경 보호에 중점을 둔다; 자원을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추출하고 사용한다; 녹색 및 재생 에너지를 발전시킨다;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 인프라를 발전시킨다.</p> <p>4. 환경 오염 제거와 퇴화된 자연 생태계의 복구에 우선순위를 둔다; 주거 지역의 환경 보호에 큰 중요성을 부여한다.</p> <p>5. 환경 보호를 위한 투자 자금의 원천을 다양화한다; 국가 예산 내에서 환경 보호에 대한 특정 지출을 설정하고 환경 보호 요구 사항과 작업에 따라 우선 순위를 둔다; 주요 환경 보호 작업에 자금 원천의 사용을 우선시한다.</p> <p>6. 환경 보호 활동에 기여하는 조직, 주거 공동체, 가정 및 개인의 이익을 보장한다; 환경 보호 활동을 위한 인센티브와 자원을 제공한다;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를 촉진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p>Article 6. Prohibited acts</p> <p>1. Failure to transport, bury, discharge and burn solid and hazardous waste in accordance with technical process and regulations of 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p> <p>2. Discharging wastewater and exhaust gases that have yet to be treated according to technical regulations on environment into the environment.</p> <p>3. Dispersing and releasing into the environment hazardous substances and harmful viruses capable of infecting humans and animals, untested microorganisms, dead bodies of animals dying of epidemics and other agents harmful to human health, creatures and nature.</p> <p>4. Generating noise and vibration in excess of the permissible level stipulated in technical regulations on environment; discharging smokes, dusts and noxious gases into the air.</p> <p style="text-align: center;">-OMITTED-</p>	<p>제 6조 금지된 행위</p> <p>1. 환경 보호법 및 기술 프로세스에 따라 고체 및 유해 폐기물을 운반, 매립, 배출 및 소각하지 않는 행위.</p> <p>2. 환경에 대한 기술 규정에 따라 처리되지 않은 폐수 및 배출 가스를 환경에 배출하는 행위.</p> <p>3. 인간과 동물에 감염될 수 있는 유해한 물질 및 유해한 바이러스, 테스트되지 않은 미생물, 전염병으로 사망한 동물의 시체 및 인간의 건강, 생물 및 자연에 해롭게 작용하는 기타 요인을 환경에 분산 및 방출하는 행위.</p> <p>4. 환경에 대한 기술 규정에서 규정된 허용 수준을 초과하여 소음 및 진동을 발생시키며, 공기 중에 연기, 먼지 및 유해 가스를 배출하는 행위.</p> <p>5. 환경 보호법에 의해 규정된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고 투자 프로젝트를 실행하거나 폐기물을 배출하는 행위.</p>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원문	번역문
<p>Article 54. Responsibility of producers and importers for recycling</p> <p>1. Producers and importers of recyclable products and packages must recycle them according to the mandatory recycling rate and specifications, except for products and packages exported/temporarily imported or produced/imported for research, learning or testing purposes.</p> <p>2. The producers and importers specified in Clause 1 of this Article are entitled to recycle products and packages adopting one of the following methods:</p> <p>a) Organize recycling of products and packages;</p> <p>b) Make a financial contribution to the Vietnam Environment Protection Fund to support recycling of products and packages.</p> <p>3. The producers and importers specified in Clause 1 of this Article shall register their recycling plans and submit annual reports on recycling results to the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except for the case in Point b Clause 2 of this Article.</p> <p style="text-align: center;">-OMITTED-</p>	<p>제 54조 생산자 및 수입자의 재활용에 대한 책임</p> <p>1. 재활용 가능한 제품 및 포장의 생산자 및 수입자는 수출/일시 수입 또는 연구, 학습 또는 테스트 목적으로 생산/수입되는 제품 및 포장을 제외하고, 의무적인 재활용률 및 사양에 따라 이들을 재활용해야 한다.</p> <p>2.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생산자 및 수입자는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채택하여 제품 및 포장을 재활용할 권리가 있다:</p> <p>a) 제품 및 포장의 재활용을 조직한다.</p> <p>b) 제품 및 포장의 재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 환경 보호 기금에 재무적 기여를 한다.</p> <p>3.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생산자 및 수입자는 본 조 제2항의 b)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들의 재활용 계획을 등록하고 매년 재활용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자연자원 및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p>Article 56. Environmental protection in craft villages</p> <p>1. Every craft village must have an environmental protection plan, an autonomous environmental protection organization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frastructure. Environmental protection infrastructure of a craft village includes:</p> <p>a) A wastewater and rainwater collection system which meets the craft village's needs for water drainage;</p> <p>b) A centralized wastewater collection, drainage and treatment system (if any) which ensures that treated wastewater satisfies environmental protection requirements;</p> <p>c) A solid waste aggregation point which satisfies technical requirement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 solid waste treatment facility (if any) which complies with regulations on solid waste management or a scheme to transport solid waste to a solid waste treatment facility outside the craft village.</p> <p style="text-align: center;">-OMITTED-</p>	<p>제 56조 공예 마을에서의 환경 보호</p> <p>1. 모든 공예 마을은 환경 보호 계획, 자율 환경 보호 조직 및 환경 보호 인프라를 가져야 한다. 공예 마을의 환경 보호 인프라에는 다음이 포함된다:</p> <p>a) 물 배수를 위한 공예 마을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폐수 및 강우수 수집 시스템;</p> <p>b) 처리된 폐수가 환경 보호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중앙 집중식 폐수 수집, 배수 및 처리 시스템(있는 경우);</p> <p>c) 환경 보호의 기술 요건을 충족하는 고품 폐기물 집계 지점; 고품 폐기물 처리 시설(있는 경우)은 고품 폐기물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거나 공예 마을 외부의 고품 폐기물 처리 시설로 고품 폐기물을 운반하는 계획이다.</p> <p>2. 공예 마을의 제조 업체와 가정은 법률에 규정된 대로 환경 보호 조치를 찾고 시행해야 한다; 소음, 진동, 빛, 먼지, 열 방사, 배출 및 폐수 감소 및 현장 오염 복구 조치를 시행한다; 법률에 따라 고품 폐기물을 수집, 분류, 보관 및 처리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원문	번역문
<p>Section 6. MANAGEMENT OF DUSTS, EXHAUST GASES AND OTHER POLLUTANTS</p> <p>Article 88. Management and control of dusts and emissions</p> <p>1. Any entity that produces dusts and exhaust gases must control and treat dusts and/or exhaust gases during its production, business operation and service provision in accordance with technical regulations on environment. Dusts whose hazardous elements exceed the permissible limits must be managed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of law on hazardous waste management.</p> <p>2. Vehicles, machinery, equipment, constructions that produce dust and/or exhaust gases must have filters, covers, or other parts to minimize exhaust gases and reduce dusts in accordance with technical regulations on environment.</p> <p>3. Ministries and ministerial agencies concerned shall provide guidelines for prevention, inspection, supervision and treatment of sources of dusts and exhaust gases that cause air pollution.</p> <p>-OMITTED-</p>	<p>제 6장. 먼지, 배출 가스 및 기타 오염물질의 관리</p> <p>제 88조. 먼지와 배출물의 관리 및 통제</p> <p>1. 먼지와 배출 가스를 생산하는 모든 주체는 환경에 대한 기술 규정에 따라 생산, 사업 운영 및 서비스 제공 중 먼지 및/또는 배출 가스를 통제하고 처리해야 한다.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유해 성분을 포함하는 먼지는 유해 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p> <p>2. 먼지 및/또는 배출 가스를 생산하는 차량, 기계, 장비, 건설물은 환경에 대한 기술 규정에 따라 배출 가스를 최소화하고 먼지를 줄이기 위해 필터, 커버 또는 기타 부품을 갖추어야 한다.</p> <p>3. 관련 부처와 장관 소속 기관은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먼지 및 배출 가스의 원천에 대한 예방, 검사, 감독 및 처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p> <p>-중략-</p>
<p>Article 108. Objects subject to environmental monitoring</p> <p>1. Environmental components to be monitored include:</p> <p>a) Water, including surface water, groundwater and seawater; b) Ambient air; c) Soil and sediments; d) Biodiversity; dd) Noise, vibration, radiation, light.</p> <p>2. Waste sources, waste and pollutants to be monitored include:</p> <p>a) Wastewater and exhaust gases; b) Controlled industrial waste for identifying hazardous waste as prescribed by law; c) Radioactivity; d) Persistent pollutants that are released into and accumulate in the environment; dd) Other pollutants.</p> <p>-OMITTED-</p>	<p>제 108조. 환경 모니터링 대상 객체</p> <p>1. 모니터링 대상 환경 구성 요소에는 다음이 포함된다:</p> <p>a) 물, 표면수, 지하수 및 해수를 포함한다; b) 주변 공기; c) 토양 및 퇴적물; d) 생물 다양성; dd) 소음, 진동, 방사선, 빛</p> <p>2. 모니터링 대상 폐기물 원천, 폐기물 및 오염물질에는 다음이 포함된다:</p> <p>a) 폐수 및 배출 가스; b) 법률에 의해 규정된 유해 폐기물을 확인하기 위한 통제된 산업 폐기물; c) 방사성; d) 환경에 방출되고 축적되는 지속적인 오염물질; dd) 기타 오염물질.</p> <p>-중략-</p>
<p>Article 170. Effect</p> <p>1. This Law comes into force from January 01, 2022, except for the case in Clause 2 of this Article.</p> <p>-OMITTED-</p>	<p>제 170조. 효력</p> <p>1. 본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 본 조 제2항의 경우는 예외이다.</p> <p>-중략-</p>